

청주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재가합1009 판결 [원인무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말소]

전 문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B중중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6. 25.

재심대상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가합20715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1) 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중중의 2015. 6. 7.자 별지 목록 기재 정기총회 결의, 청주시 서원구 C에

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5. 6. 7.자 구분지상권설정계약, 청주지방법원 2015. 12. 31. 접수
제187932호로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주문 중 제3항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종중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 B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된 G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8.

31. 아래와 같은 주문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1. 이 사건 소 중 구분지상권설정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 확인 청구 부분,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피고 B종중의 2015. 6. 7.

자 별지 목록 기재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B종중은 원고에게, 피고 B종중의 2015. 6. 7.자 별지 목록 기재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종중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는 원고가, 1/2는 피고

B종중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

담한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종중의 대표자라 하는 G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진행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은 위 G가 아닌 피고 B종중에게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켰다. 이는 부당하며,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의 인정 여부

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

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2016. 9. 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20. 9. 13.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를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기타 이 사건 기록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원고의 주장들을 살펴봐도 재심

대상판결에 재심사유를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주문 제3항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피고 종종 총회 결의가 부적법하여 무효 판결이 되었는데도 피고 종종 대표자 행세를 하는 G 개인이 아닌 피고 종종에게 소송비용을 부담 시킨 것이

잘못 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고, 본안 재판에 대한 상소와 함께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본안재판은 이미 확정되었고, 원고 주장사유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병렬, 판사 김환권, 판사 전보람

별지

2015. 6. 7.자 임시총회 결의

1. B종중 대표자를 G로 선임
2.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J 확보사업에 종중 재산(청주시 서원구 C) 일부가 편입되어 이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계약 및 보상금수령관계와 제반 행정절차 등 일체의 행위를 G에게 위임하기로 한 결의. 끝.

1)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피고인 B종중 외에 한국전력공사를 피고로 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재심피고와 한국전력공사’를 의미한다(이하 같다).